강의실 운영 규칙

제정 2023. 7. 17. (규칙 제10호)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춘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자율학습, 보충학습, 동아리 활동 등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휴 강의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학습”이라 함은 문화원 문화학교 정규 강좌 이외의 기간에 강사의 지도 없이 수강생 스스로 진행하는 학습 방식을 말한다.

2. “보충학습”이라 함은 자율학습을 제외한 문화원 문화학교 정규 강좌와 별도로 강사가 지도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학습 방식을 말한다.

3. “동아리 활동”이라 함은 문화학교 강좌를 중심으로 수강생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문화원 내 문화 활동 모임을 말한다.

4. “학습자”라 함은 자율학습, 보충학습, 동아리 활동 등을 위해 강의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기간 및 시간) 강의실 운영기간은 평일을 원칙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자율학습 및 보충학습은 강좌별 운영시간에 따른다. 단, 강좌가 분반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 반의 시간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4조(사용절차) ① 강의실 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강의실 사용 최소 7일 전까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서 상의 사용인원은 강좌 또는 동아리 등록인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담당자는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 ① 보충학습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위배하여 강사가 학습자로부터 임의로 수강료를 수납하는 경우, 원장은 강의실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6조(관리) ① 강의실의 원활한 운영과 소통을 위해 학습자 중에서 대표 1인을 둔다.

② 대표는 학습자의 안전과 강의실의 청결한 사용을 위해 퇴실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 냉방 및 온열기기 전원 끄기

2. 형광등 소등

3. 앞 뒤 출입문 잠금

4. 강의실 내 쓰레기 등 오염물질 수거

5. 불법부착물 제거

제7조(준수사항) 학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강의실 운영 규칙과 강사 및 대표의 지시사항

2. 다른 학습자의 학습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

3. 음료 및 식수 등의 섭취를 위한 일회용 용기 사용 금지. 단, 머그잔 및 다회용기 등을 사용한 섭취는 가능

4. 떡, 과자 등의 간식류 섭취 금지

제8조(경고조치) 학습자가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경고조치를 하고 재발시 사용을 제한시킬 수 있다.

부 칙 (2023.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 |
| ■ 강의실운영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율학습  □ 보충학습  □ 동아리 활동 | | 신청서 | |
|  | | | | | |
| **강 좌 명**  **(동아리명)** |  | | **강의실명** | |  |
| **사용요일**  **및 시간** |  | | **사용인원** | |  |
| **강 사 명** |  | | **대표자명** | |  |
| (보충학습의 경우 작성) | | | | | |
| **차수** | **강의계획** |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강의차수가 늘어나는 경우 추가하여 사용 가능